

# 규약 작성 시 유의 사항 안내서

---

2024.01

## 일 러 두 기

규약 작성 시 유의 사항 안내서는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 규정 [별지1] 벤처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원활한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변경 절차를 위해 주로 보완요청 드리는 사례들을 참고하여 규약에 작성 시 유의사항과 관련 법령을 기재하였습니다.

결성예정 및 규약 변경예정 벤처투자조합의 세부 요건 등을 확인하시고, 내부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개정 혹은 법령에 대한 해석 변경 등이 있을 시에 안내서의 내용은 추후 수정될 수 있습니다.

안내서와 관련하여 개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메일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조합 규약

## 제 1 절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약은 벤처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재산의 배분 등을 위하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있어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간에 합의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잘못된 예시) 한국벤처투자조합, 창업투자조합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① 본 조합의 명칭은 「○○」(이하 "조합" 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이라 한다.

② 본 조합의 사무소는 업무집행조합원인 ○○의 본점에 둔다.

\* 조합의 명칭은 고유번호증, 제출서류, VICS상 조합명과 통일(띄어쓰기 포함)

\* 조합의 소재지는 VICS 및 고유번호증상 소재지와 동일

제3조 (조합의 성립 시기) 본 조합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날로부터 성립한다.

\* 잘못된 예시) 본 조합은 결성총회일로부터 성립한다.

1. “출자”라 함은 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 “출자지분”이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재산에 대하여 갖는 공동소유의 비율을 말한다.
3. “출자증서”라 함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증명하고 그 권리행사를 위한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서로서,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발행·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4. “조합원”이라 함은 조합에 출자하고 그 출자지분에 따라 출자증서를 교부받은 자로서, 조합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업무집행조합원(○○)과 출자가액을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한다.
5. “출자금 총액”이라 함은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조합원이 출자 이행을 확약한 총액을 말하며, 설립출자금과 추가출자금으로 구성된다.
6. “설립출자금”이라 함은 각 조합원이 그의 출자금 총액 중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의 결성시에 납입한 출자금액을 말한다.
7. “추가출자금”이라 함은 각 조합원의 출자금 총액에서 설립출자금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조합의 설립 후에 본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될 금액을 말한다.
8. “납입출자금”이라 함은 각 조합원이 본 규약상의 출자의무의 이행으로써 조합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말한다.
9. “조합재산”이라 함은 조합원이 조합에 출자한 출자금 및 이를 운용하여 취득한 권리, 현금 및 기타 재산으로서 조합에 귀속되는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10. “투자업체”라 함은 법에 따라 조합에서 투자한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11. “투자유가증권”이라 함은 투자업체가 발행한 주권과 사채권, 기타 유가증권으로서 조합이 투자한 대가로 취득한 것을 말한다.
12. “투자수익”이라 함은 조합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제26조에 의한 조합운영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서 조합원들에게 분배하였거나 분배할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
13. “내부수익률(IRR)”이라 함은 조합원의 출자 등으로 조합이 운용하는 금액의 현재가치가 조합원에게 분배되는 등으로 조합원이 회수하는 금액의 현재가치와 동일하게 되는 할인율을 말한다.
14. “기준수익률”이라 함은 제28조에 의한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수익률을 말한다.
15. “회계감사인”이라 함은 조합재산의 운용상황에 대한 감사 및 결산보고 등을 실시하기 위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이 선임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
16. “수탁기관”이라 함은 조합재산을 보호·예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보관·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17. “대표 펀드매니저”라 함은 조합의 업무를 수행할 책임을 지고 있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또는 직원을 말한다.
18. “일반결의”라 함은 총 출자좌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의 출자금 총액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조합원의 찬성을 얻는 것을 말한다.
19. “특별결의”라 함은 총 출자좌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는 것을 말한다.
20. “업무 협약”이라 함은 업무집행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간에 규약 이외에 체결한 모든 종류의 계약을 말한다.
21. “납입기간”이라 함은 조합원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기간을 말하며, 제3조의 조합이 성립한 날로부터 ○년까지를 말한다.
22. “투자기간”이라 함은 제3조의 조합이 성립한 날로부터 ○년까지를 말한다.
23.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24. “프로젝트 투자”란 법 제2조제1호다목 및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의 지분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25.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26.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27.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8.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3의2호 및 제2조제4의2호에 따른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 표준규약 개정**

29. “특별조합원”이란 본 규약 상 유한책임조합원 중 한국모태펀드를 말한다.

**\* 창업기획자가 GP인 경우, 제25호~제28호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 가능**

-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창업기업을 말한다.

**\* 제4조의 각 호 내용은 조합의 전반적인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 가능**

제5조 (관계법령의 준수) 조합의 결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규정(이하 “근거법령”이라 한다)과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규약의 변경) ① 본 규약은 총 출자좌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발의에 따라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또는 운용인력의 주소·연락처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은 사전보고 후 규약변경에 대한 조합원총회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7조 (소송의 관할) 본 규약에 관한 분쟁 및 조합에 관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관할로 한다.

\* 조합의 소재지와 지방법원 통일  
예시)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 본 규약 및 조합에 관한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을 제1심 전속관할로 한다.

## 제 2 절 출 자

제8조(출자) ① 출자 1좌<sup>1)</sup>의 금액은 금○○○원(₩○○○)정도로 한다.

② 조합 성립시의 출자금 총액<sup>2)</sup>은 금○○○원(₩○○○)정도로 한다.

③ 출자금 총액은 설립출자금과 추가출자금으로 구성되며, 설립출자금 총액<sup>3)</sup>은 금○○○원(₩○○○)정도로 하고, 추가출자금 총액은 금○○○원(₩○○○)정도로 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총 출자금 총액의 70% 이상을 제4조제21호의 납입기간 내에 납입요청을 해야 한다.

\* 1) 출자 1좌의 금액은 최소 100만원 이상 2) 출자금 총액은 최소 20억원 이상(단,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 최소 10억원 이상) 3) 설립출자금은 최소 10억원 이상(단, 업무집행조합원이 창업기획자인 경우 최소 5억원 이상) (시행령 제34조제1호 및 2호)

\* 납부방식에 따라 하단에 내용을 참고하여 추가

(1) 수시납 - 추가출자금은 기 납입된 출자금의 ○○%이상이 소진되고, 투자수요 등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납입해야 하며, 매회(최종회 및 조합운영경비 수요발생의 경우 제외) 요청하는 추가출자금 총액은 ○○억원(출자금 총액의 ○○%)이상으로 한다.

(2) 분할납 - 추가출자금은 ○회 동안 균등한 금액으로 분할 납입해야 하며, 업무집행조합원은 기 납입된 출자금의 ○○%이상 소진 후 출자요청해야 한다.

제9조(출자금 구성) 출자자별 출자금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조합원명	출자금 총액	설립출자금	추가출자금	출자비율
업무집행조합원					%
유한책임조합원					%
					%
	소 계				%
특별조합원					%
계					

- \* 유한책임조합원은 49인 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비율은 최소 1% 이상(시행령 제34조제3호 및 제4호)
- \* 집합투자기구/특정금전신탁/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민법상조합이 LP로 출자한 경우, 해당 LP의 출자성격 및 출자자수 명시(단, 집합투자기구 및 벤처투자조합은 출자비율이 10% 이상일 경우에만 출자자수 기재)
- \* 신탁업자가 특정금전신탁으로 출자하지 않았을 경우, 출자 성격을 '고유' 라고 기재  
예시) 000(특정금전신탁, 출자자수 0인), 000(집합투자기구, 출자자수 0인), 000(민법상조합, 출자자수 0인), 000(고유)

제10조 (출자방법) ① 조합에 출자하고자 하는 자는 출자신청서를 업무집행조합원인 ○○(이하 “회사”라 한다)에 제출하고, 출자금을 회사가 정하는 기일과 장소에 납입해야 한다.

- ② 출자는 원화로 하되, 현금에 한한다.
- ③ 조합원별로 납입일이 다른 경우 당해 연도의 수익분배는 각 조합원의 실제 납입일로부터 일할계산에 의한다.
- ④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의 출자금 납입지연을 이유로 자기의 출자금 납입을 지연하거나 거절할 수 없다.

\* 납부방식이 수시납 또는 분할납일 경우 표준규약 제10조 (주1) 내용 반영

제11조 (출자증서의 교부)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0조에 의하여 출자를 이행한 조합원에 대하여 제15조에 의한 결성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기명 날인한 출자증서를 발행·교부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출자증서 번호
  2. 조합원의 성명·**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3. 조합의 출자금 총액 및 총 출자자수
  4. 조합원의 납입출자금액 및 보유 출자자수
- ② 출자증서는 기명식으로 하고, 이 규약에서 정한 바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양도 또는 매매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 ③ 출자증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재발행하지 아니한다.

\* 잘못된 예시) 조합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  
\* 수시납, 분할납일 경우 제1항에 ‘단, 제8조제3항에 의한 최초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제15조에 의한 결성총회 후 1개월 이내에 발행·교부해야한다’ 문구 추가

### 제 3 절 조합원과 조합원총회

제12조 (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에 1좌 이상을 출자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단, 외국인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본 규약이 어떤 조합원과의 관계에서 무효로 되거나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도 본 규약은 그 외 다른 조합원과의 관계에서는 유효하고 이들 조합원은 출자의무를 포함한 본 규약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진다.

③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지위의 양도 및 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결성시 최초로 소정의 가입절차를 밟은 자 이외에는 새로이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조합결성 이후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출자자를 조합원으로 가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출자금은 금○○○원(₩○○○)정 이내의 금액에 한한다.

④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체투자 금액이 영(0)인 경우에는 조합 총지분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아 새로 유한책임조합원을 추가할 수 있다.

**\* 유한책임조합원 양도/양수 이외 새로운 출자자 가입은 조합원 전원동의 사항(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6조제2항) 단, 출자금이 투자에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해당되는 동의를 받아 새로운 유한책임조합원 추가 가능**

제13조 (조합원의 구성) 조합을 구성하는 조합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집행조합원 : (조합원명 기재)
2. 유한책임조합원 : (조합원명 기재)

**\* 규약 제9조상 유한책임조합원명과 동일**

제14조 (조합의 존속기간) ① 조합의 존속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년으로(또는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년 연장할 수 있다.

**\* 조합의 존속기간은 최소 5년 이상 설정(시행령 제34조제5호)**

제15조 (결성총회) ① 조합의 결성총회는 조합원별 출자가 완료된 후 개최한다.

② 결성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의한다.

1. 본 규약의 승인
2. 사업계획의 승인

③ 결성총회에서의 결의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하며, 출자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결성총회 결의는 조합원 전원동의 사항**

제16조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그 출자좌수와 본 규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원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권리
2. 조합재산을 본 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배분받을 권리

3. 기타 관련법령 및 본 규약에 의한 권리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조합원의 자격으로 지득한 내용을 조합의 존속기간 중 또는 조합 존속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조합원 이외의 제자에게 누설하지 않을 의무
2. 기타 조합재산의 관리·운영에 저해되거나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

제17조 (유한책임조합원의 탈퇴) ① 유한책임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한하여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1. 법인인 조합원이 합병 이외의 사유로 해산한 때
2. 개인인 조합원의 사망 또는 성년후견 선고
3. 파산 선고
4.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서 당해 조합원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탈퇴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탈퇴한 조합원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조합해산시까지 탈퇴 당시의 출자원금에 해당하는 지분의 반환을 유보할 수 있다.

④ 조합원의 탈퇴 및 그 출자금의 환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다.

**\* 유한책임조합원 탈퇴는 조합원 전원동의 사항(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6조제1항제4호)**

제18조 (유한책임조합원의 제명)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유한책임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조합원을 제외

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당해 조합원을 제명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를 방해하거나 조합운영에 중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행위
2. 기타 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의무의 불이행 행위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제명된 조합원을 제외한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은 본 조합 해산시까지 이를 유보할 수 있다.

③ 조합원의 제명 및 그 출자금의 환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비용은 당해 조합원이 부담한다.

제19조 (유한책임조합원 지위의 양도) ① 제17조에 의하여 조합을 탈퇴하는 유한책임조합원이 그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양도양수계획서를 첨부하여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고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지위를 양수하는 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양도하는 자의 권리와 조합원으로서의 의무 및 책임을 포괄 승계한다.

② 유한책임조합원이 출자지분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자지분의 양도양수계획서를 첨부하여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서면으로 신청하고 다른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합원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양도하고자 하는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다른 조합원들이 출자지분에 비례하여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제20조 (유한책임조합원 지위의 승계와 대리) ① 자연인인 유한책임조합원이 사망, 한정후견 또는 성년후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당해 유한책임조합원의 지위를 승계 또는 대리할 수 있다.

② 법인인 유한책임조합원이 합병 또는 조직변경 등으로 새로운 법인이 발족된 때에는 그 법인이 당해 유한책임조합원의 지위를 포괄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

제21조 (조합원총회) ① 조합원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조합원총회는 조합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결산
2. 규약의 변경
3. 유한책임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지위의 양도
4. 조합의 해산 및 청산
5. 조합의 존속기간의 연장
6. 출자금 총액의 증액(또는 감액)
7. 조합재산 배분
8. 조합의 회계감사인 선임
8. 기타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중요한 사항

제22조 (조합원총회의 소집 및 운영) ① 정기총회는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임시총회는 출자금 총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조합원의 소집청구가 있을 때에 각각 개최하며, 업무집행조합원이 이를 소집한다.

② 조합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하되, 총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전까지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조합원총회의 의장은 업무집행조합원을 대표하는 자로 하되, 업무집행조합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 업무집행조합원을 대표하는 자들을 공동의장으로 한다.

④ 조합원총회의 결의는 본 규약에서 별도로 결의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결의에 의한다.

⑤ 조합원총회에서 조합원의 의결권은 출자 1좌당 1개로 하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⑥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은 조합원총회 개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조합원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며,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내용과 그 결과를 기록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기명날인한 후 조합의 청산 완료시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 한다.

제23조 (조합원의 감사) 유한책임조합원은 제41조에서 정한 자료를 수령한 후 25일 이내에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서면으로 본 조합의 재산현황 및 업무집행조합원의 업무집행현황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업무집행조합원은 질문을 받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당해 질문에 답변해야 한다.

## 제 4 장 조합의 운영

제24조 (업무집행조합원의 권한과 의무)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이 규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의 명의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이외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 조합을 대표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1. 조합재산의 관리·운영
  2. 투자대상 기업의 선정 및 투자
  3. 투자업체의 육성·지원과 투자유가증권에 관한 권리의 행사
  4. 출자증서의 발행 및 교부
  5. 조합재산의 배분
  6. 회계장부 및 기타 회계에 관한 기록의 작성·유지 및 보관 등 조합의 회계처리
  7. 조합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과 보수의 지급 등 조합채무의 변제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부수되는 업무로서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기타 본 규약에서 정하는 업무
- ② 조합이 재판상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을 민사소송법 제53조의 선정당사자로 한다.
-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근거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조합의 업무집행에 있어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25조 (조합원의 책임) ① 유한책임조합원은 출자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며, 출자한 금액을 초과하여 본 조합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진다. 다만, 근거법령 및 관계법령 또는 본 규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조합업무의 집행 결과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조합 및 다른 조합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 (조합운영경비) ①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조합의 부담으로 한다.

1. 조합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득 및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
2.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된 회계감사 및 법률자문 수수료
3. 전사적자원관리(ERP)의 도입 및 운영비용
4. 조합재산의 수탁기관에 대한 수탁수수료
5.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한 소송비용
6. 조합의 청산에 소요되는 경비(청산인을 선임한 경우에 한함)

- 7.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되는 관리보수
  - 8. 기타 조합결성 또는 운영에 관련된 직접경비로서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비
- ② 제1항을 제외한 업무집행에 관한 비용은 업무집행조합원의 비용으로 한다.
- ③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의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조합이 부담할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조합에 대하여 그 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7조 (관리보수) ① 조합은 존속기간 중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관리보수로 지급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은 출자금 총액의 연 ○%에 해당하는 금액
  2.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날로부터 ○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해산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은 투자잔액(매분기말 평균잔액 또는 일일평균잔액)의 연 ○%에 해당하는 금액
- ② 관리보수는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분기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결산에 대한 조합원 총회의 승인 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2분의1의 범위내에서 선지급할 수 있다.

**\* 관리보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원 간 협의에 따라 설정**

제28조 (성과보수) ① 조합은 존속기간 중 내부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거쳐 투자수익의 100분의 ○○을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다만, 투자수익의 100분의 ○○을 차감한 후의 내부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들에게 기준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배한 후 투자수익의 잔여분만을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 ② 당해 조합의 기준수익률은 ○○%로 하며, 성과보수는 조합의 최종 결산시에 지급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등록 후 3년 및 본 규약이 정한 투자기간이 경과하고 제30조제1항 및 본 규약에서 별도로 정한 투자의무를 달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조합의 최종 결산 이전에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약정된 출자금을 모두 납입하였거나, 추가 납입하지 않기로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조합원에게 배분한 누적 금액이 '배분 시점의 출자원금 및 기준수익률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에 달할 때까지 조합원에게 우선 배분한다.
  2. 제1항에 따른 배분 후 남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투자수익의 100분의 ○○을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3. 제2항에 따른 배분 후 남은 금액은 조합원의 출자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 ④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성과보수의 범위 내에서 당해조합의 운영에 참여하여 투자수익의 발생에 기여한 대표 펀드매니저 등 임직원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한다.

**\* 성과보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조합원 간 협의에 따라 설정**

제29조 (조합재산의 관리와 운용의 원칙)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을 조합재산 외의 다른 재산과는 구분하여 조합명의로 관리·운용하고, 독립회계로서 장부 등의 기록유지 및 시재점검 등의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을 수탁회사로 지정하여 원칙적으로 동 회사가 조합재산을 보관·관리하도록 하며, 수탁회사에 대한 운용지시를 통해 자산을 취득 또는 처분해야 한다.

-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투자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④ 법 제5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조합자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동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차입할 수 없으며, 타인을 위한 보증행위를 할 수 없다.
- ⑤ 조합자산은 <별표 1>의 대표 펀드매니저의 책임 하에 운용하되, 업무집행조합원이 대표펀드매니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제30조 (투자의 방법)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창업기업, 벤처기업 또는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중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 다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또는 중소기업이 개발하거나 제작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제4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 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날까지 〇〇%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 \* 창업기획자가 GP인 경우(CO-GP포함), 제1항을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날로부터 0년이 지난 날까지 00% 이상 투자로 변경
- \* 벤처투자조합 투자의무비율(법 제51조, 시행령 제35조,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7조)
  - 1) 블라인드 펀드 또는 프로젝트 펀드 - 3년이 지난날까지 인정투자방법에 출자약정액의 20%이상 투자
  - 2) 세컨더리/M&A 펀드 - 3년이 지난날까지 시행령 제35조 제7항 제1호~제4호 중 하나의 방법에 출자약정액의 60%이상 투자

1.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한다.
2.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무담보교환사채(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수
3. 규칙 제3조에 따른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4. 제4조제24호에 따른 프로젝트 투자

- \* 일반 세컨더리 펀드 : 각 호 내용을 '시행령 제35조 제7항 제2호'로 변경
- \* 지분유동화 펀드 : 각 호 내용을 '시행령 제35조 제7항 제3호'로 변경
- \* 테일엔드 펀드 : 각 호 내용을 '시행령 제35조 제7항 제4호'로 변경
- \* 모펀드 : 각 호 내용을 '시행령 제35조 제7항 제5호'로 변경
- \* M&A 펀드 : 각 호 내용을 '시행령 제35조 제7항 제1호'로 변경

- ② 동일기업에 대한 투자한도는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〇〇이내로 한다. 다만,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〇〇까지 할 수 있다.
- ③ 당해 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영 중인 다른 조합이나 업무집행조합원 자신의 재산으로 투자한 기업에는 투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기존에 투자되지 않은 기업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같은 조건으로 동시에 투자하거나,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업무집행조합원은 근거법령의 취지에 따라 이 조합의 존속기간 내에 회수가 가능한 업체 중 높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업체를 심사 후 선정한다.
-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업체와 투자계약을 체결·이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매출 및 영업이익 등 경영 성과와 관련된 지표를 이유로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기간 전에 투자금을 조기 회수하는 행위
  2. 투자계약서에서 합의된 투자금 조기회수 가능 사유로 인해 투자계약 만기 전에 투자금을 회수하는 경우 통보 후 최소 2개월 이상 투자업체에게 상환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단, 투자업체와 합의할 경우 상환 준비기간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3. 국내 주식시장 상장 실패를 이유로 최초 계약시 정한 주식 가격을 30% 이상 조정하는 행위
  4. 무담보전환사채 및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규 인수 방식으로 투자하면서 투자 대상을 사실상 프로젝트 투자로 한정하거나 프로젝트 투자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
  5. 본 조합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날 이전에 투자금을 집행하는 행위
- ⑥ 업무집행조합원은 유한책임조합원과 조합의 투자 내용 및 대상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경우 아래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1. 협약 내용은 협약 체결 및 변경 전에 모든 유한책임조합원에게 공개 및 승인되어야 한다.
  2. 업무집행조합원은 업무 협약에 따른 투자를 집행할 경우 이를 심사보고서에 명기해야 한다.
  3. 조합의 누적투자액 대비 업무 협약에 따른 투자금액의 비율은 전체 출자금 대비 해당 유한책임조합원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1조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및 투자의 방법) ① 규정 제8조에 따라 조합의 출자금 중 금○○○원(₩○○○)정을 출자하여 투자목적회사 "「○○」(영문으로는 「○○」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투자목적회사는 아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한다.

1. 차입금융기관 :
2. 차입금액 :

③ 규정 제8조에 따라 투자목적회사는 설립 이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설립자본금 및 차입금을 합한 금액의 ○퍼센트 이상을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대하여 투자해야 한다. 투자의 방법은 제30조를 준용한다.

④ 규정 제5조제2항을 준용하여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은 투자목적회사의 설립 당시의 출자금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벤처투자조합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 출자원금을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

⑤ 투자목적회사는 당 회사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이 해산되기 이전에 청산종결되어야 한다. 이 경우, 벤처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목적회사가 청산되었음을 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해야 한다.

⑥ 투자목적회사가 청산종결 되었음에도 처분하지 못한 잔여 주식 또는 지분이 있을 경우에는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이 인수해야 한다.

⑦ 투자목적회사는 다른 벤처투자조합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미투자자산의 운용) 업무집행조합원은 본 조합의 존속기간 중 발생하는 미투자자산은 조합원의 수익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효율적으로 운용하되 안정적 투자수요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에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33조 (투자정보의 제공) 업무집행조합원은 투자기업 현황, 사업현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유한책임조합원에 제공해야 한다.

## 제 6 절 조합재산의 배분

제34조 (배분대상 재산)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재산의 원천은 조합재산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과 보수 등을 공제한 잔여재산으로 하며, 각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1. 제26조에서 정한 조합운영경비
2. 제28조에서 정한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성과보수

제35조 (배분원칙) ① 조합재산의 투자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sup>1)</sup>에 따라 매 사업연도 결산 후 현금으로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벤처투자조합은 영 제34조제1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원금을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다.<sup>2)</sup>

③ 조합 청산시 현금화되지 못한 유가증권이 있을 경우에는 조합원의 동의에 따라 현물로 배분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분배(배분)금액 및 시기는 조합원의 동의로 정한다.

1) 수익 배분은 조합원 총회 없이 배분 가능

2) 원금 배분은 조합원 동의(조합원 총회) 후 배분 가능(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5조제2항)

제36조 (손실금 총당) ① 조합의 청산시까지 제26조에 의하여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금액을 공제한 후,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이 조합의 출자금 총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합원별 출자비율에 따라 손실금을 총당하며, 손실금 총당시 조합원간(업무집행조합원 포함) 총당순위를 달리하지 아니한다.

1. 청산 이전에 조합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확정된 분배금
2. 제17조에 의한 탈퇴 조합원에 대한 환급금
3. 제18조에 의한 제명된 조합원에 대한 환급금.
4. 청산시에 조합원에게 배분할 재산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손실금의 총당시기는 본 조합이 해산하는 때에 한한다.

\*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투자조합 손실보전 행위 금지(법 제60조)

제37조 (손실금 보전) ① 업무집행조합원이 조합규약과 근거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조합원에게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당해 손실금을 손실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업무집행조합원이 보전해야 한다. 단, 업무집행조합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보전한다.

② 제1항의 손실금이라 함은 업무집행조합원의 부당행위로 인하여 조합재산의 실질가액이 감소한 경우 그 감소한 금액을 말하며, 손실금 원금과 법정이자도 포함된다.

## 제 7 절 회 계

제38조 (사업연도) 조합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최초의 사업연도는 중소벤처 기업부에 등록된 날로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마지막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조합의 존속기간이 만료 되는 날까지로 한다.

제39조 (회계원칙) 조합의 회계처리는 본 규약에서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 회계 관습에 따른다.

제40조 (투자유가증권의 평가) ① 조합 존속기간 중 투자유가증권의 장부가액은 취득가격에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투자유가증권의 평가는 공개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된 증권의 경우에는 조합의 해산결의 직전일 종가에 의하고, 공개되지 아니한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또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결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전문평가기관이 평가한 가격을 유가증권의 최종적인 평가액으로 확정한다.

제41조 (회계보고 등) ① 업무집행조합원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에 관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조합이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를 작성하고, 회계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함께 정기 조합원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원총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제1항의 회계서류를 각 조합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의 감사보고서를 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시할 수 있다.

제42조 (회계장부 등의 열람) 유한책임조합원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회계장부, 조합재산 현황 등에 관한 자료(조합이 출자한 투자목적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열람·복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조합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 제 8 절 해산 및 청산

제43조 (해산) ① 조합은 본 규약에 따라 연장되지 않는 한 조합 존속기간 만료시에 해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존속기간 만료 전에 해산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때
3.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탈퇴한 때
4.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의 등록의 말소

5. 업무집행조합원 전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등록 취소, 합병, 파산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지속할 수 없게된 경우

6. 조합의 자산이 잠식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조합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출석한 조합원의 지분의 합이 조합 총지분의 과반수이고, 출석한 조합원 지분의 3분의 2 이상과 조합 총지분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벤처투자조합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유한책임조합원은 전원의 동의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5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의 존속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 결성목적 달성으로 인한 조기 해산의 경우, 조합원 전원동의 사항(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제44조 (청산인) 조합이 해산하는 때에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의 정상적인 청산업무의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라 청산인을 별도로 선임할 수 있으며,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 (청산인의 직무와 권한) ① 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재산목록 및 재무제표의 작성·교부
2. 재산 처분계획의 수립
3. 조합사무의 종결 및 투자유가증권 등의 처분
4.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5. 잔여재산의 분배
6. 기타의 청산사무

② 청산인은 제1항의 직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판상 및 재판 이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46조 (청산인의 의무와 책임) 청산인이 청산인의 직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조합의 이익을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제47조 (청산의 절차) ①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목록 및 재무상태표를 작성하고 재산의 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각 조합원에게 송부한다.

② 청산인은 조합의 채무를 변제한 후가 아니면 조합재산을 배분하지 못한다. 다만,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에 필요한 재산을 유보하고 잔여재산을 배분할 수 있다.



## 제 9 절 보 칙

제48조 (규약의 해석 및 보충) 본 규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는 사항 또는 본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거법령 및 관계법령과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행에 따라 해석하고 보충한다.

제49조 (조합원 합의) 본 규약은 조합에 관하여 조합원들 간의 최종적인 합의이며, 이 규약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조합에 관하여 조합원들 간에 행해진 모든 서면 또는 구두의 합의, 양해 및 보장 등은 이 규약의 발효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본 규약으로 대체된다.

제50조 (규약의 유효기간) 본 규약은 조합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날로부터** 등록말소된 날까지 유효하다.

**\* 규약에 부칙이 있는 경우, 부칙상 시행일과 동일**

제51조 (통지) ① 본 규약에 따른 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며, 우편, 직접교부, 팩시밀리 기타 일반적으로 인정된 방법에 의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통지의 효력발생은 원칙적으로는 우편의 경우 발송일로부터 5일 후, 직접 교부시는 교부일에, 팩시밀리의 경우는 전송시점으로부터 24시간 후에 수령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 전원의 동의로 통지의 효력발생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한 통지는 별도의 변경 통지가 없는 한, 아래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사무소로 해야 한다.

주 소 :

우편번호 :

전 화 :

F A X :

전자우편 :

제52조 (외국인 조합원에 대한 특칙) ① 외국인조합원은 필요하다면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신고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외국인인 조합원은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③ 이 규약 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작성되는 서류가 한국어와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경우에 양자 간 모순 또는 상위가 있을 때에는 ○○어로 작성된 규약 또는 서류가 우선한다.

제53조 (기타 특약사항)

**\* 특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